

컨설팅 및 사이버보안 서비스 조건

본 조건은 이타스코리아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비동, 9층 (삼평동, 유스페이스 1)(이하 "공급자")가 고객(이하 "고객")에게 컨설팅 및 사이버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용된다.

1. 계약 대상

- 1.1. 본 조건의 대상은 공급자가 컨설팅 및 사이버보안 서비스(침투테스트, 보안위험분석, 보안컨셉개발 등)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객과 공급자는 별도의 문서로 목적, 주제, 범위, 콘텐츠, 로케이션, 전문가 및 기술 프레임워크 조건, 작업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 등 세부 이행 사항에 동의하여야 한다.
- 1.2. 제안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의 모든 제안은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 1.3. 본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 1.4.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작업명세서나 상품의 사용자 매뉴얼(www.etas.com/manuals) 또는 상품 명세서나 서비스 명세에 정의되어 있는 합의된 용도만을 위한 것으로, B2B 거래로 제한된다. 서면(작업명세서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공급자의 서비스는 공급자의 상품이 제공되는 타겟시장을 위해 유효하다.
- 1.5. 본 조건에 반하거나 본 조건을 보충하는 고객의 조건은 유효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는 고객의 주문서나 기타 문서에 언급되고 공급자가 그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1.6. 당사자들이 다른 조건에 합의하지 않는 한, 본 조건은 장래의 모든 컨설팅 및 사이버보안 서비스 제공에 적용된다.

2. 작업 및/또는 서비스의 제공

- 2.1. 공급자만이 작업 및/또는 서비스 제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그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는 작업 및/또는 서비스가 고객의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2.2. 공급자는 계약상 합의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도급자(관계기업 및 제3자 포함)를 고용할 권리를 가진다. 서비스 이행이 고객으로 하여금 전유적인 비밀정보 및 문서의 공개나 제공을 요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정보 및 문서가 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 하도급자에게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그러한 정보 제공 전에 공급자는 각 하도급자가 제공받은 모든 정보와 문서에 대해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도록 한다. 공급자는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3. 공급자는 인정받는 최신 기술을 토대로 작업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2.4. 서비스의 경우, 공급자는 특정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2.5. 또한, 침투테스트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고객은 자신의 요구사항에 따라 테스트의 최종 범위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침투테스트는 기간 및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테스트 대상 제품이나 IT 시스템의 모든 취약점을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침투테스트 시점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새로운 취약점 및 공백이 발견됨에 따라 보안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침투테스트의 커미셔닝에는 제품이나 IT 시스템의 취약점 제거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자는 해당 취약점 제거에 대한 추가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다.
- 2.6. 공급자가 정한 인도일과 이행일은 공급자가 서면에 의해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구속력을 가진다.

기한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에 한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합의된 인도일 및 마일스톤의 개시 및 준수는 장비 제공, 문서, 허가, 조사, 릴리스 및

합의된 지급조건 준수 등에 대한 고객의 협력 의무 이행에 따라 달라진다. 고객의 협력 의무가 적절하게 또는 적시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인도 기한은 적절하게 연장된다.

- 2.7. 인도기한의 미준수 원인이 전쟁이나 이와 유사한 충돌, 테러리스트 공격, 전염병/유행병, 수출입 제한 등 공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 및 기타 장애(공급업체 및 하도급자에 영향을 미치는 동일한 성격의 사유 포함)에 있는 경우, 합의된 인도일은 해당 방해기간 만큼 연장된다. 이는 공급자 또는 그 공급업체가 관련된 노동쟁의에도 적용된다. 고객은 서비스(들) 지연 및/또는 불가용에 대해 즉시 통지받아야 한다.
- 2.8. 공급자가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수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개별 주문서 또는 컨설팅계약에 따른 컨설팅 및 사이버보안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이 적용된다.

3. 작업 및/또는 서비스(들)

- 3.1. 고객이 합의된 작업 및/또는 서비스 제공 기간 중 그에 대한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공급자는 변경 가능 여부 및 이로 인해 일자 및 합의된 보수 등 계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2. 공급자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변경이 있는 경우, 공급자는 그러한 면밀한 검토의 예상 기간과 비용을 고객에게 알리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잠정적 평가를 제공하며, 날짜와 합의된 보수 등 계약에 미치는 영향(있는 경우)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3.3. 변경 절차 진행 중에도 공급자는 계약상의 작업 및/또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 및/또는 서비스 변경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시점 또는 당사자들이 변경 요청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변경 요청 자체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에 이르는 시점까지 작업이

중단 또는 제한되어야 함을 고객이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작업결과물

- 4.1. 작업결과물은 공급자가 고객을 위해 개별적으로 창작한 모든 작업물(문서, 프로젝트 스케치, 프레젠테이션 및 관련 초안 등)이다. 고객은 합의된 보수의 전액 지급 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업결과물에 대해 어떠한 기한 제한 없이 비독점적인 사용권을 제공한다. 고객은 작업결과물을 복제 및 편집하거나, 다른 디스플레이 형식으로 변환하거나, 이를 다른 방식으로 보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작업결과물은 고객이 이용을 완전히 중단한 이후에만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 이는 고객이 저작권법 에 따라 갖는 법적 보호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4.2. 공급자가 제3자 소프트웨어 등 제3자의 제품을 통합·공급하는 개별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와 관련하여 특별 이용조건이 적용되며, 이는 제안서/개별계약의 별지로 첨부되어 본 계약의 일부가 된다.
- 4.3.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공급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서브라이선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아니한다.
- 4.4. 작업결과물이 소프트웨어인 경우, 오브젝트 코드의 소프트웨어 사본이 제공 범위에 포함된다.
- 4.5. 제공된 권리의 종류를 불문하고, 공급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격을 가진다.
 - a) 동일한 기능을 가진 유사한 작업결과물의 개발 및
 - b) 작업 및/또는 서비스 제공 시 지득한 노하우에 대한 제한없는 지속적인 사용(제10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4.6. 작업결과물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포함된 경우, 공급자는 고객에 이를 알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해당 목록 및 관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을 제공받아야 한다. 고객은 제4.1항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고객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을 수락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각 라이선서로부터 직접 추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것(제3자에 대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전송 등)이 허용된다. 이 경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사용은 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에 의해서만 규율된다.

4.7. 작업결과물에 포함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이 소스코드 제공 의무를 포함하는 경우, 고객의 요청 시, 공급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적절한 이용 및 전송 기간 내에 적절한 매체로 소스코드를 제공한다.

5. 보수, 지급기일

5.1. 합의된 보수는 간접세(매출세, 상품·서비스세, 부가가치세, 판매세, 특별 상품·서비스세 등과 이에 대한 부가금 및 가산세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세금은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고객이 추가로 부담한다.

5.2. 계약 체결 이후 (단체협약 등에 따른)인건비 변동 또는 자재비 변동 등으로 인해 원가가 인상하는 경우 및 계약 서명일과 인도일 간의 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공급자는 가격을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자는 해당 변경에 대한 증거를 고객에 제공하여야 한다.

5.3. 보수가 작업 시간 기준으로 합의된 경우, 공급자는 매월 전월 작업 시간(일수) 목록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고정 보수에 합의한 경우, 별도로 합의한 지급 일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지급일정이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금액의 계약금(down payment)을 a) 계약 개시 시점, b) 최초

일부 인도 시점, c) 인수를 위한 제공 시점 및 d) 인수 이후 지급하여야 한다.

5.4. 공급자의 작업 및/또는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출장비는 작업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합의된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개별적으로 합의한다.

5.5. 공급자의 모든 청구서는 수령 및 지급기일로부터 30일 내에 공급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어떠한 공제도 없이 비현금 방식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지급 허용 기간의 준수 여부 판단 시 청구금액이 공급자에게 입금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5.6. 연체 발생 시, 공급자는 법정금리의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공급자의 권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동시지급(대금교환불(cash on delivery) 또는 자동이체 등) 또는 선지급 조건으로 인도할 자격을 가진다.

5.7. 또한, 공급자는 가장 오래된 미지급 채권 금액에 대해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

5.8. 반대청구에 다툼이 없거나, 또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있는 판결에 의해 인정되거나, 진행 중인 소송에서 곧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한하여, 고객은 지급을 보류하거나 반대청구와 상계할 수 있다.

5.9. 계약 체결 이후 공급자가 고객의 지급능력 결여로 인해 자신의 채권 회수가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 공급자는 선지급 또는 담보 제공 시에만 서비스를 이행하고, 이러한 취지로 설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6. 고객의 협력 및 정보제공 의무

6.1. 고객은 명시적으로 계약의 일부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 및/또는 서비스가 고객의 요구 및 요건에 부합할 지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의문이 있는 경우, 고객은 계약 체결 전에 공급자 또는 제3자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

- 6.2. 고객은 합리적인 협력조치로 공급자의 작업 및/또는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고객은 서비스의 인도 및/또는 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에 대해 공급자에게 완전히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검증을 계약상 의무로 하는 데 합의하지 않은 한, 공급자는 고객이 공급자에게 공급한 데이터, 정보 또는 기타 서비스를 완전성과 정확성과 관련하여 확인 또는 검증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나 서류가 결함이 있고 불완전하고 모호하거나 객관적으로 이행불가능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고객은 공급자가 통지하는 즉시 필요한 수정 및/또는 변경을 수행한다. 고객은 지체 없이 공급자로부터 통지받은 고객이 공급한 컴포넌트의 결함이나 장애를 시정하거나 시정하게 한다. 특히, 고객은 무상으로 공급자에게 이에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영업시간 중에 필요한 경우에만 하여 공급자의 직원이 고객의 사업장에 출입하도록 한다. 또한, 고객의 사업장에서 작업 및/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고객은 워크스테이션, 컴퓨터, 전화기, 인터넷 연결 및 프린터 등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제공한다.
- 6.3. 고객은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적절한 규모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을 갖추 전적인 책임이 있다. 고객은 작업결과물에 결함이 없고 (해당되는 경우) 기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업결과물을 사용하기 전에 철저하게 테스트한다.
- 6.4. 고객은 공급자가 트러블-슈팅(trouble-shooting) 및 시정 목적상 공급자의 선택에 따라 직접 및/또는 원격 접속으로 작업 및/또는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한다.
- 6.5.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절하게 가동되지 않은 경우, 고객은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한다(일일 데이터 백업, 고장진단, 정기적인 데이터 처리 결과 확인 등). 고객이 사전에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공급자는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고객의 모든 데이터가 (백업 등에 의해)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 6.6. 작업결과물에 대한 표시, 특히 저작권 고지, 상표, 시리얼 번호 등은 제거,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없다.
- 6.7. 침투테스트 과정에서 공급자는 고객 및 제3자의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은 침투테스트 전에 해당 제3자로부터 모든 필요한 확인을 받고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할 것임을 확약한다. 고객은 침투테스트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공급자에게 제공한다. 이는 필요한 경우 고객이 지정한 시스템 및/또는 미공개 데이터의 전송 및/또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전자기 복사에 대한 접근 제한에도 불구하고 해당 데이터에 대한 공급자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202a ff StGB).
- 6.8. 고객의 계약 불이행, 즉 고객의 상기 협력 및 정보제공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공급자가 작업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공급자는 그에 따른 성능 결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서비스 크레딧 포함). 고객이 협력, 협조 또는 자재를 제공할 자신의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준수하지 않고 그로 인해 지연 및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합의된 기한 및/또는 마일스톤을 조정하고 그러한 지연이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추가 비용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기한 연장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협력의 지연 기간과 그에 따른 기타 시간효과(temporal effect)(필요한 기동시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 6.9. 고객의 통제를 벗어난 의무 불이행 또는 지연의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고객이 제6조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연하여 공급자가 부담한 모든 비용을 공급자에게 상환한다. 또한, 공급자가 법적 자격을 가지는 법적 구제수단 및 청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7. 보장

- 7.1. 공급자는 서비스 제공 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Page 5/7}공급자가 작업을 불완전하게 수행하는 경우, 불완전하게 수행된 정도만큼 계약상 의무에 대한 불이행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보수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과실이 있는 불완전 이행은 특정 상황에서 고객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
- 7.2. 공급자 또는 제3자가 작업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공급자는 주장된 또는 추정된 권리 침해를 시정하기 위해 고객의 이익을 적법하게 고려하여 합의된 기능을 유지하면서 작업결과물을 대체하거나 수정할 자격을 가진다.

8. 책임

- 8.1. 법률 조항에 따라,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와 같은 손해에 대해 책임진다: 대인손해,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규율되는 손해; 공급자 측의 사기적 행동 또는 고의로 초래된 손해 및 공급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임원의 중과실로 인해 초래된 손해.
- 8.2. 제8.1항에 정의된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없이, 계약상 근본적 의무를 일반적인 과실(ordinarily negligent breach)로 위반하여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및 공급자의 일반대리인(ordinary vicarious agents)의 중과실로 인해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손해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은 이러한 종류의 계약에서 예측가능한 손해 수준으로 제한된다. 근본적 의무는 그 이행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에 필수적이고, 고객이 그 이행에 의존할 자격을 가지는 의무를 지칭한다. 이와 반대되는 본 조건의 명시적인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는 상기 정의된 바를 초과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8.3. 고객 측의 기여과실을 고려한다.
- 8.4. 상기 책임의 제한은 공급자의 직원, 대리인 및/또는

기관의 개인적 책임에도 적용된다. 또한, 상기 조항은 낭비된 비용에 대한 보상과 면책의무와 관련된 공급자의 책임에도 적용된다.

- 8.5. 고객은 침투테스트 제공과 관련하여 공급자를 상대로 하는 제3자의 모든 청구로부터 공급자를 면책한다. 이는 지식재산권, 저작권 및/또는 인격권 침해로 인한 제3자의 청구뿐만 아니라 그러한 청구의 방어 또는 형법 및/또는 행정법에 기한 주장에 대한 방어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제3자의 청구 등에 적용된다.
- 8.6. 침투테스트는 테스트된 제품이나 IT 시스템의 파손(데이터 손실, 시스템 고장, 운영중단, 제품 파손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운영 중인 IT 시스템에 대한 침투테스트는 고객의 명시적인 주문을 받은 경우에만 수행된다. 공급자는 제품 파손, 제품이나 IT 시스템의 고장 또는 데이터 손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고객은 제3자의 모든 청구 및 그러한 청구에 대한 방어비용에 대해 공급자를 면책한다.

9. 레퍼런스 목록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공급자는 고객의 성명 및 그 회사 로고를 자신의 레퍼런스 목록에 포함하고 제3자에게 해당 목록을 제공하거나 광고 목적상 해당 목록을 공개할 자격을 가진다. 고객은 장래를 향해 언제라도 그러한 사용에 반대할 수 있다. 다만, 공급자는 고객이 그러한 사용에 반대한 시점에 이미 공개된 광고를 회수하거나 변경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10. 비밀유지

- 10.1.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정보와 기타 자료, 특히 운영과정, 사업관계 및 노하우에 관한 정보(이하 "비밀정보")를 비밀로 취급하고 제3자가 이에 접근할 수 있게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제3자에는 독일 주식회사법(Aktiengesetz)

제15조에 정의된 계열회사 및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공급자의 하도급자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유사한 중요도를 가지는 자신의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주의(다만, 합리적인 정도 이상이어야 함)를 기울여야 한다.

10.2. 제10.1항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a) 정보공개자가 공개하기 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적법하게 소유한 비밀정보; b) 어떠한 의무 위반도 없이 일반에 알려졌거나 알려지게 되는 비밀정보; c) 정보수령자가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수령한 비밀정보; d) 정보공개자가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한 비밀정보; e)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정보수령자가 개발한 비밀정보; f) 법률상 공개되어야 하는 비밀정보; 또는 g) 정보공개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취득한 후 공개될 수 있는 비밀정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0.3. 공급자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양 당사자들 및 독일 주식회사법(AktG) 제15조의 의미에 속하는 당사자들의 관계회사들이 컨설팅 업무 시 컨설팅 업무의 틀 내에서 일방 당사자가 취득한 새로운 지식(특히, 상대방 당사자 사업과정의 절차와 환경에 대한 지식)(“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여하한 비밀유지의무와 존재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부여 및 그에 대한 제한에 우선한다. 이러한 체계 내에서 이 목적상으로만, 당사자들이 결과물을 활용하는 데 기존 노하우가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들은 각 상대방이 기존 노하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11. 해지

11.1. 고정 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3개월 전에 통지하여 해당 분기 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2. 고객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특히 지급 지연의 경우 기타 계약·법령상 권리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여하한

통지 없이 합리적인 유예기간 후에 계약을 해지할 자격을 가진다.

11.3. 해지는 서면/이메일로 이루어져야 한다.

12. 수출통제 및 통관

12.1. 각 당사자는 계약에 적용되는 (금수조치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국내 및 국제 (재)수출 통제 및 관세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대외 무역법(이하 “대외무역법”)에 따라 본 계약 하의 의무사항 이행을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될 경우, 그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각 당사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술적 또는 법적 이유로 인하여 일부 이행이 배제되거나 일방 당사자가 일부 이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지에 따라 계약이 전부 종료된다.

12.2. 라이선스, 승인 또는 대외무역법 상의 유사 요구사항(이하 “승인”)으로 인해 본 계약 하의 의무사항 이행을 지연될 경우, 해당 의무사항의 이행 시기는 그와 상응하도록 연장/조정되고, 양 당사자는 그러한 지연으로 인한 미준수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신청 후 12개월 내에 승인이 거부되거나 승인되지 않을 경우, 일방 당사자는 해당 승인이 필요한 의무사항 수행 범위 안에서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기술적 또는 법적 이유로 인하여 일부 이행이 배제되거나 일방 당사자가 일부 이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지에 따라 계약이 전부 종료된다.

12.3. 각 당사자는 제12.1항의 이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제12.2항에 따라 이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대외무역법에 대해 인지할 경우, 합리적인 시간 내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한다.

12.4.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고객은 대외무역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하거나 대외무역법과 관련해 당국이 요청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정보와 문서에는 최종 고객/사용자 정보, 인도품과 서비스의 목적지 및 의도된 최종 용도가 포함되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 고객이 공급자에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그러한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는 공급자의 재량에 따라 본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사항 이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5. 고객이 (특히 고객의 자회사를 포함한) 제3자에 인도품 및 서비스를 ^{Page 7/7} 제공할 경우, 고객은 관련 대외무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객이 동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사항 이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6.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자는 제12.1항, 제12.2항, 제12.4항, 및 제12.5항에 의거한 계약 해지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사항 이행 거부와 관련하여,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객의 어떠한 배상 청구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7. 7.1 관세 국경을 넘어 공급자에게 상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고객은 상업송장, 인도증서 등 화물에 대한 완벽하고 정확한 세관 신고를 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와 정보를 공급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공급자에 무상 인도되는 경우, 고객은 견적 송장에 "세관통관용(For Customs Purpose Only)" 라는 문구와 더불어 공정시장가격을 반영한 가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동 가치는 하드웨어와 개별 소프트웨어와 같은 상품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7.2 인도 서류나 견적 서류에 서면으로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한,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기타 데이터(맵 데이터 등)의 국가간(customs-cross-border) 제공이나 공급은 전자적 수단(이메일 또는 다운로드 등)을 통해서만 수행된다. 본 항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하드웨어에 플래시된 소프트웨어)의 공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3. 일반조항

13.1.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공급자는 자신의 소재지 또는 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고객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3.2. 본 조건 및 이와 관련된 공급자와 고객 간의 모든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 협약은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13.3. 어느 조항이 무효이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 이는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그러한 무효 조항은 기존 무효 조항의 상업적 목적에 가장 근접한 인정될 수 있는 합의를 통해 대체된다.

ETAS GmbH